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777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4월 3일
- 회 부 일 : 2024년 4월 8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별표 내용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의 종류는 조례로 정하고 각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규정한 별표 1(제4조)을 삭제하고, 청소년활동, 복지지원, 복지, 기타 등 청소년 시설의 종류(안 제4조제1항)를 신설하며, 삭제한 별표 1의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 등은 고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맞춤법, 용어 개선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제출하였음.

### ※ 본 개정안의 내용

- 정의 수정, 관련 법령의 추가
  - 관련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추가 (안 제2조 제1호)
- 청소년시설의 종류 신설 및 시설 변경 고시
  - 청소년시설의 종류 신설 (안 제4조 제1항)
  - 청소년시설 명칭, 기능, 위치 변경 시 시장의 고시 (안 제4조 제2항)
- 별표 1 삭제
  - 별표 1 삭제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8조 제7호부터 제9호, 안 제10조 제1항)
  - 별표 1(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삭제
- 용어의 정비
  - 명확한 표현 (안 제2조 제4호, 안 제2장 제목, 제8조 제2항, 안 제8조 제7호부터 제9호)
  - 약칭 사용 (안 제5조 제4항, 제8조 제1항)
  - 겹말 (안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안 제11조 제1항, 안 제15조 제2항)

○ 본 조례 별표 1은 청소년 활동시설(30개소), 청소년 복지시설(12개소), 기타 청소년시설(13개소) 등 55개 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별표 1)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첨부자료1 참고)

-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 청소년 복지시설: 쉼터(일시,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등
- 기타 청소년시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 현재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59개소이며, 시설의 폐쇄, 이전,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조례 별표 1과 현행 시설에 차이가 있어 현행화(추가, 폐지, 재분류 및 주소, 기능 등)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별표 1)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현행화 필요사항

- 시설 폐지: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2023.06.30. 폐쇄)
- 시설 추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2001.04.01. 개소, 별도 조례 운영) 등
- 시설 분류: 시립청소년드림센터(기타 청소년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등
- 기능 변경: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청소년 미래진로 역량 강화 지원 등)
- 위치 변경: 시설 이전에 따른 위치(자치구) 변경

시설명	자치구		위 치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금천여자청소년 단기쉼터	금천구	금천구	봉은사로 114길 43	가산디지털1로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북구	중구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6층	중구 창경궁로 1길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구	성북구	면목로 23길 20	성북구 길음로 7길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구	은평구	통일로 684	통일로 62길 7
청소년드림센터	강남구	양천구	봉은사로 114길 43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출처: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 나. 청소년시설 관련 법령의 추가

### 1) 관련 법령의 추가(안 제2조제1호)

-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고려하면, 같은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령과 조례의 규율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

-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 설립목적: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
- 운영기관: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등 7개소
  - 창동, 영등포(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성북, 동작, 은평, 양천(시립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등
- 기 능: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본 조례 별표 1 명시)

출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 다. 청소년시설의 종류 신설 및 변경 사항 고시

### 1) 청소년시설의 종류 신설(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 제1항은 본 조례 별표 1을 삭제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시설·복지지원시설·복지시설·기타 청소년시설 등 4개 분야로 규정하고,
  - 안 제4조 제1항 각호를 신설하여 안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구분한 시설들의 예시를 나열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문 해석과 운영상 혼란 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 각 시설의 예시를 나열할 뿐 시설 특징 또는 구별·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누락하고 있어, 시설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명확한 구분을 위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u>별표 1</u> 과 같다.	제4조(설치) ①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u> 2. <u>청소년복지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u> 3. <u>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u> 4. <u>기타 청소년시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u> ② 제1항 각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각각 청소년시설의 종류로 ‘청소년 복지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있는바,
  - 근거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정하고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은 제31조(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구분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복지지원시설’과 ‘복지시설’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위해 복지시설과 복지지원시설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설을 복합화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청소년시설의 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이 제출한 청소년 시설 구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 청소년시설 신설, 폐지, 변경 시 서울특별시장 고시(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 제2항은 청소년시설의 명칭정비, 시설 이전 등에 따른 시설 주요사항의 변동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별표 1) 개정 대비 간결한 절차와 처리시간 등 빠르고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고시로 정하는 경우 입법예고(의견제출), 의회 안전심의 및 승인 절차 등(조례 개정 절차)이 없이 청소년시설의 신설·폐지·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고시의 의미와 효력(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2024. 02.)

- 고시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임.

※ 조례 개정 및 고시 절차(첨부3, 4 참고)

·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절차

- ① 입법계획 수립 → ② 사전협의(주관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 ③ 입법예고 →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⑤ 법제심사 → ⑥ 확정방침 수립 → ⑦ 조례·규칙심의회(1차) → ⑧ 시의회 안건 제출 → ⑨ 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 → ⑩ 조례·규칙심의회(2차) → ⑪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 서울특별시시장 고시 절차

- ①고시·공고안 계획(방침) 수립 → ②고시 · 공고
- 행정예고 생략 대상 중 사업관련 각종 모집(선정) 관련 공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심사, 행정예고, 중요문서 심사 등 절차 생략 가능

○ 조례의 개정은 규제와 법규, 정책 등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의견조회 및 의회심의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여건의 고려, 정책의 타당성과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책 시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소년시설은 본 조례 제1호(목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 권익 보장 및 자유로운 활동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고,
- 조례 개정의 과정 없이 시장의 고시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정해지는 경우 시설의 빈번한 신설, 폐지, 변경 및 과도한 업무위탁 등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책임성 저하 등의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에서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시설은 모두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총 59개 시설)되고 있으며, 그 근거와 정의를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를 근거로 추진 중이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는 민간위탁을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는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 확보, 민간 조직망을 활용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 중이며,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의 재위탁,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 청소년시설의 신설, 위탁연장(재위탁 등)에 대해 다각도에서의 심의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청소년시설의 중요성으로 인해 설치부터 운영 방식까지 모두 법률과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시설의 안정성과 대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시립시설을 특정하고, 조례에 특정된 시설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조례 개정에서 서울특별시장 고시로 변경할 경우 의회의 동의, 조례 개정 없이 서울특별시장의 고시로 청소년시설의 변경·폐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설치·변경(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시설 폐지의 경우에는 동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서울특별시장의 자율적인 폐지가 가능함.
  - 본 개정안은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주소 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결정만으로 고시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의회 동의 없이 고시로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며,
  - 이는 서울의 모든 민간위탁을 관할하는 조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로 규정한 바를 고시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조례의 부정합, 의회 권한의 훼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4조 제2항에 단서(다만, 중요한 내용의 변경, 재위탁 등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후 고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 고시의 주요내용이 “중요사항의 변경”인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도 개정취지(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의회 의결 절차 삭제)는 이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제14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 라. 용어의 정비

1) **명확한 표현** (안 제2조제4호, 안 제2장 장제목,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7호,  
제8호, 제9호, 안 제11조)

○ 안 제2조(정의)제4호는 ‘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을 ‘청소년시설의 사용’  
으로 개정하고 ‘쓰는’을 ‘이용하는’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미상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을 의미하고, ‘이용’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씬’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시설 사용’에 대해 정의하는 규정을 감안하여 일반적 의미로 표현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4호는 청소년시설의 시설, 강습 등을 필요에 따라 ‘쓰는’ 것에서, ‘이용하는’으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사용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
- 이용 :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

- 한편, 청소년시설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민간위탁은 사무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건물과 토지)의 관리·운영도 위탁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의 규율도 적용되는바,
  - 공유재산법은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직접 임차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받는 비용을 “사용료”로, 임차·관리·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받는 비용을 “이용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다른 용어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위탁관련 사항은 위탁 규정에 따라, 재산의 이용 활용은 공유재산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 <u>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u> "이라 함은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	제2조(정의) ----- -----. 4. " <u>청소년시설의 사용</u> "----- -----

현 행	개 정 안
(설비), 강습 등 일체의 서비스를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	----- ----- <u>이용하는</u> ----.

- 안 제2장 제목, 안 제6조 조제목, 안 제11조 제목의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을 ‘청소년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청소년시설을 명확히 지칭하면서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u>	제2장 <u>청소년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u>
제6조( <u>시설의 사용 등</u> ) ①② (생략)	제6조( <u>청소년시설의 사용 등</u> ) ①② (생략)
제8조(사용료 등) ② (생략)	제8조(사용료 등) ② (생략)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u>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u> : 월 <u>사용료 100분의 10 감면</u>	7. ----- <u>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u> ----- -- <u>100분의 10 감면</u>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u>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u> : 월 <u>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u>	8. ----- ----- ----- <u>청소년 시설</u> ----- <u>100</u> <u>분의 50 감면</u>

현 행	개 정 안
<p>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u>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u></p>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생략</p>	<p>9. ----- ----- ----- ----- ----- ----- ----- ----- ----- ----- <u>청소년시설</u>----- ----- -----<u>100분의 50</u> <u>감경</u></p> <p>제11조(<u>청소년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u>) ① 생략</p>

- 안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중 “감면” 용어를 “감경” 용어로 개정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 ‘줄여서 가볍게 한다’는 의미인 ‘감경’은 「형법」상 법정형을 줄이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중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감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매겨야 할 부담을 덜어 주거나 면제한다’는 의미인 ‘감면’은 ‘조세 감면’, ‘학비 감면’, ‘관세 감면’ 등 원인제공부담, 또는 사용자부담 완화와 관련된 행정행위에서 사용하며, 그 사용례와 의미를 고려할 때 ‘감경’보다 ‘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 현행 법령의 조문 제목 중 ‘사용료 감경’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해,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포츠클럽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어떠한 용어가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본청) 조례 중 ‘사용료 감경’을 조문 내용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외하고 ‘사용료 감면’을 조문 제목과 내용에서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행 법령 조문 제목 중 ‘사용료 감경’, ‘사용료 감면’ 사용 빈도

- 사용료 감경 :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조문 내용에서 사용료 감경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료 감면’ 대비 그 사례와 빈도가 적고, 형벌,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주로 사용함.
- 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사용료의 감면),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등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감경 : 줄여서 가볍게 함. 「법률」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또는 그런 형벌에 처하여짐. 유의어: 경감
- 감면 :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 등급 따위를 낮추어 면제함.
-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감경’의 사용례로 ‘본래 정해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 등 「형법」상 법정형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감면’은 ‘조세 감면’, ‘학비 감면’, ‘관세 감면’ 등에 사용함.

## 2) 약칭 사용 (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6조 제1항)

- 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반복되는 문구나 단어 등을 간단하게 줄여 표시하는 약칭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6조제1항은 ‘시설이용자’를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로, ‘시장’을 정식명칭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복잡하고 긴 내용 또는 반복되는 표현에 대해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운영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미 본 조례 제2조(정의)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로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안 제11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 간결한 표현을 위해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단1회 사용을 위해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u>시설이용자</u>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 <u>시장</u>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5조(운영의 원칙) ① ----- ----- - <u>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u>-----.</p> <p>④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u>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u>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제6조(청소년시설의 사용 등) ① <u>사용자</u>----- -----.</p>
<p>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u>사용료</u>”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p>	<p>제8조(사용료 등) ① ----- ----- 범위----- ----- “<u>사용료등</u>”----- -----</p>



현 행	개 정 안
<p>경우 <u>서울특별시</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사용료</u>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p>	<p>----. ----- <u>시장은 사용료등</u>----- ----- -----.</p>
<p>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u>사용료</u>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 ----- <u>사용료</u> <u>등을</u> -----.</p>
<p>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u>사용료</u>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납부한 <u>사용료</u>를 반환할 수 있다.</p>	<p>③ ----- <u>사용료등을</u> <u>납부</u>----- ----- ----- <u>사용료등을 반환</u>-----.</p>
<p>④ <u>사용료</u>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④ <u>사용료등</u>-----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p>

- 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은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를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등”)’로 개정하여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 등 복수(複數, 둘 이상의 수)인 시설 사용 요금을 ‘사용료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안 제8조 제목은 ‘사용료 등’으로 띄어쓰고 있고, 본문은 ‘사용료등’으로 붙여쓰고 있어 조례안 표현의 통일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한글 맞춤법」 제45항에 따르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고 되어 있으며, 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의 ‘사용료등’은 약칭의 의미로 사용료 뿐만 아니라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열거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 ‘사용료 등’으로 띄어쓰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약칭의 의미(2022년 법령입안심사기준)

-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

- ※ 「한글 맞춤법(행정규칙)」 제5장(띄어쓰기) 제2절(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책상, 결상 등이 있다  
 · 이사장 및 이사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 약칭 사용의 정도와 방법(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2022년, p.415)

- “A, B, C ~~”를 약칭할 때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 B, C ~~” 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A등”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3) 겹말 (안 제10조 제1항, 안 제11조 제1항, 안 제15조 제2항)

-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은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뜻이 중복된 단어(겹말)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 겹말(같은 뜻을 지닌 말이 겹쳐서 된 말)을 올바른 표현(겹말을 삭제한 용어, 역전앞 →역전, 강제납치→납치, 기습공격→기습, 농사일→농사, 현안문제→현안 등)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보임.



- 국립국어원은 범위를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를 뜻하며, 범위는 ‘안’ 또는 ‘밖’이라는 뜻을 내포하지 않고 있어, ‘범위 안’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설(국립국어원-상담사례모음 중 2019.12.6.)하고,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은 그 뜻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만 해설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은 각종 어문안내서(공공언어 등)를 통해 ‘범위 내’, ‘범위 안’, ‘범위를 설정하여’ 등으로 바른 한글사용 및 공공언어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음.

※ ‘범위 안’과 관련한 국립국어원 해설(2019.12.6.)

- 질문 :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의미 중복 표현이라는데 ‘예산의 범위에서’로 써야 하나요?
- 답변 : ‘범위’는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를 뜻하는데, 범위에는 ‘안’의 뜻이 없으므로 **‘범위 안’을 의미가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만으로 그 뜻을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2항은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 안 제11조 제2항의 개정은 ‘범위 안’을 ‘범위’로 표현할 수 있는 제한적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바, 맞춤법에 부합한 개정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즉, ‘범위’와 관련한 개정은 올바른 맞춤법(원칙 : 범위 안)을 일부 허용하는 표현(범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확한 어문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이 조문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지, 본 개정안을 통해 얼마나 확연한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법령에서 ‘범위에서’라고 표현하여 조례와 상위법령 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은 ‘범위에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7차례 사용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맞는 표현과 국어 맞춤법에 따른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대한민국 헌법 중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108조, 제113조, 제114조, 제116조(2회), 제117조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김 준 년
---------	-------	-----------	-------

첨부1.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주말활동 지원	여의대방로20길 33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통일로 684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청소년 음악창작활동 지원	신정동 120-6외 4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2. 청소년 복지 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봉은사로 114길 4B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난곡로24가길 54
	중랑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송림길 15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만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	통일로 92길 37-6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	도당로 17길34 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위기(가정 밖)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	한천로 140길 5-24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여의대방로 20길 33
	마포구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삼산로 8송림빌딩 5층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우장산로 117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구천면로 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면목로 23길 2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	여의대방로 20길 33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	통일로 684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성문화센터, 쉼터 등 포함)	봉은사로114길 4B

## 첨부2. 2024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현황

- 청소년센터(21개소)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연번	시설명	위치	수탁법인	현 수탁기간
1	강동청소년센터	강동구 아리수로93길47	(사)한국청소년연맹	2022.7.1.~2025.6.30.
2	광진청소년센터	광진구 구천면로 2	(사)홍사단	2023.7.1.~2025.6.30.
3	보라매청소년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61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21.7.1.~2024.6.30.
4	서울청소년센터	중구 을지로11길 23	(사)한국청소년육성회	2023.7.1.~2025.6.30.
5	중랑청소년센터	중랑구 용마산로 217	(사)한국청소년연맹	2023.7.1.~2026.6.30.
6	창동청소년센터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2023.7.1.~2026.6.30.
7	화곡청소년센터	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	(사)홍사단	2024.1.1.~2026.12.31.
8	강북청소년센터	강북구 4.19로 74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2021.7.1.~2024.6.30.
9	구로청소년센터	구로구 구로동로 141	(사)한국청소년연맹	2023.1.1.~2025.12.31.
10	금천청소년센터	금천구 금하로30길 54	(재)푸른나무재단	2023.7.1.~2026.6.30.
11	노원청소년센터	노원구 덕릉로70길 99	(재)푸른나무재단	2023.1.1.~2024.12.31.
12	동대문청소년센터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사)한국청소년연맹	2021.7.1.~2024.6.30.
13	마포청소년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212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2024.1.1.~2026.12.31.
14	망우청소년센터	중랑구 송림길 156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24.1.1.~2025.12.31.
15	목동청소년센터	양천구 목동서로143	(사)한국청소년재단	2023.7.1.~2026.6.30.
16	문래청소년센터	영등포구 문래로 110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2024.1.1.~2026.12.31.
17	서대문청소년센터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사)한국청소년재단	2023.7.1.~2025.6.30.
18	성동청소년센터	성동구 고산자로 260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20.7.1.~2026.6.30.
19	성북청소년센터	성북구 한천로 660-9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2023.7.1.~2025.6.30.
20	수서청소년센터	강남구 광평로 144	(사)한국청소년세상	2023.1.1.~2024.12.31.
21	은평청소년센터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사)복엔젤스헤이븐	2023.1.1.~2024.12.31.

- 유스호스텔(2개소)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

연번	시설명	위치	수탁법인	현 수탁기간
1	서울유스호스텔	중구 퇴계로 26가길 6	(사)한국스카우트연맹	2023.1.1.~2024.12.31.
2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영등포구 영신로 200	(사)한국청소년연맹	2023.7.1.~2025.6.30.



- 청소년특화시설(7개소) :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

연번	시설명	위치	수탁법인	현 수탁기간
1	문화교류센터	중구 퇴계로26 가길 6, 2층	(재)대산문화재단	2022.4.1.~2024.12.31.
2	미디어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255	푸른나무재단	2023.7.1.~2026.6.30.
3	활동진흥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61	(사)한국청소년연맹	2024.1.1.~2026.12.31.
4	미래진로센터(하자)	영등포구 영신로 200	(학)연세대학교	2023.7.1.~2026.06.30.
5	노원미래진로센터 (앤드)	노원구 노원로16길 16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2024.3.31.~2026.12.31.
6	청소년드림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37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22.7.1.~2025.6.30.
7	청소년음악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657	(학)서경대학원 서경대학교	2022.1.1.~2024.12.31.

-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14개소) :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시설

연번	시설명	위치	수탁법인	현 수탁기간
1	용산일시	용산구 만리재로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23.1.1.~2024.12.31.
2	양천일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22.7.1.~2025.6.30.
3	강북일시	강북구 한천로	(학)충신대학교	2022.7.1.~2024.6.30.
4	서북이동	청소년밀집지역(강북)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23.1.1.~2024.12.31
5	서남이동	청소년밀집지역(강북)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23.1.1.~2024.12.31.
6	동북이동	청소년밀집지역(강남)	(사)인터넷꿈희망터	2023.1.1.~2024.12.31.
7	동남이동	청소년밀집지역(강남)	(사)인터넷꿈희망터	2023.1.1.~2024.12.31.
8	신림남자단기	관악구 신림로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2023.1.1.~2024.12.31.
9	금천여자단기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사)한국청소년연맹	2023.1.1.~2024.12.31.
10	망우여자단기	중랑구 송림길	(사)삼동청소년회	2022.7.1.~2024.6.30.
11	신림남자중장기	관악구 난곡로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2023.1.1.~2024.12.31.
12	금천여자중장기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2023.1.1.~2024.12.31.
13	은평여자중장기	은평구 통일로	(사)복행복창조	2022.7.1.~2025.06.30.
14	시립청소년자립 지원관	도봉구 방학동외1	(사)인터넷꿈희망터	2022.12.26.~2024.12.2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개소)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연번	시설명	위치	수탁법인	현 수탁기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구 을지로 11길 23	(사)한국청소년육성회	2024.7.1.~2026.6.30.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시립 6개소) : 건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예방, 상담업무

연번	시설명	위치	수탁법인	현 수탁기간
1	광진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광진구 구천면로 2	(사)홍사단	2023.7.1~2025.6.30
2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61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21.7.1~2024.06.30
3	마포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212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2023.7.1~2026.6.30
4	창동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학)삼육학원삼육대학교	2021.9.29~2024.9.28
5	강북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중구 창경궁로1길 14 201.203호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2022.4.1~2024.12.31
6	강서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강서구 우장산로 117	(학)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강서대학교	2021.9.29~2024.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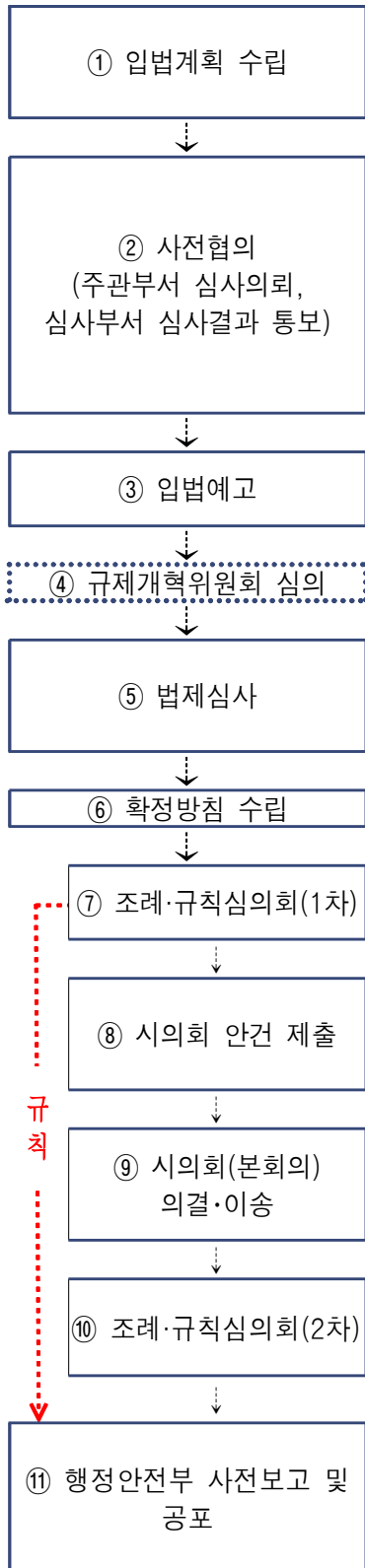
- 청소년성문화센터(시립7개소) : 청소년 특성에 맞춤 참여형 성교육, 성지식 및 정보제공

연번	시설명	위치	수탁법인	현 수탁기간
1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영등포구 영신로 200	(재)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 연맹유지재단	2021.12.7.~2024.12.6.
2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구 구천면로 2	(사)홍사단	2023.7.1.~2025.6.30.
3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2023.7.1.~2025.6.30.
4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37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22.7.1.~2024.6.30.
5	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성북구 길음로 7길 20	(사)탁틴내일	2022.7.1.~2024.6.30.
6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1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2023.7.1.~2024.12.15.
7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사)한국청소년연맹	2021.6.1.~2024.5.3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개소)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 발굴, 상담, 복교·진학지원, 직업·취업지원

연번	시설명	위치	수탁법인	현 수탁기간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23-1	(재)스마트교육재단 ·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컨소시엄	2023.9.29.~2026.9.28.

### 첨부3. 자치법규 입법절차 흐름도(서울시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 조례·규칙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 ※ [필수] 협조경유: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각 실국 소관팀장)
  - ※ 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조경유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됨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
- 공공갈등진단: 평가담당관
- 위원회 관련사항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의

- 20일 이상: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시보: 매주 목요일 발간(홍보담당관)

- ②(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의뢰(주관부서→법무담당관, 위 ②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 법제심사결과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수립(주관부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상정의뢰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안 시의회 제출(회기 개시 15일 전)  
(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 ⑪ 사전보고 및 공포절차 진행

- 시장발의 원안가결 안건은 ⑩조례·규칙심의회(2차) 심의 제외
- 시장발의 수정가결 안건 및 의원발의 안건 ⑩조례·규칙심의회(2차)  
상정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공포 또는 재의요구 확정방침 수립하여 조례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 상정의뢰

- 조례·규칙 모두 공포 전 행안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 조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사전보고 및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
  - 규칙: 공포 15일 전 사전보고

#### 첨부4. 행정예고 생략대상인 고시·공고(서울시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 ③ 협조결재 및 행정예고심사 미이행 사유서 첨부 불필요)



-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심사팀장 협조결재 없이 바로 고시·공고번호 부여
  - ① 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 각종 채용관련, ② 사업관련 각종 모집·선정 관련

#### ① 소관 부서별 고시·공고안 계획(방침)수립 (소관부서)

-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생략대상(붙임1 ③ 행정예고 생략 대상 참고)으로,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의뢰 절차 생략

#### ② 고시·공고에 대한 시보·인터넷 등 게재 (소관부서)

- 소관부서→정보공개담당관으로 고시·공고번호 부여 요청
- 고시·공고번호 부여 요청 공문에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표시하고, 미이행 사유는 '① 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 각종 채용관련, ② 사업관련 각종 모집·선정 관련' 중 선택하여 작성

※ 고시·공고번호 부여 요청 시 법제심사팀장 협조결재 및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첨부 생략

#### ③ 행정예고 생략 대상(협조결재 및 행정예고심사 미이행 사유서 첨부 불필요)

- ① 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 각종 채용관련 공고
- ② 사업관련 각종 모집(선정) 관련 고시·공고

### ① 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 각종 채용관련 공고

연번	고시, 공고명	고시·공고 근거법령	관련부서
1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면접시험 공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 인사규칙 등	해당 부서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 인사규칙 등	해당 부서
3	공무직 채용시험·면접시험·최종합격자 공고	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해당 부서
4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면접시험·최종합격자 공고	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해당 부서
5	뉴딜일자리사업(000) 참여자 채용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등	해당 부서
6	000 사업 요원 최종합격자 공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 부서
7	000 시민감시단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해당사항 없음	해당 부서

### ② 사업관련 각종 모집(선정) 관련 공고

연번	고시, 공고명	고시·공고 근거법령	관련부서
1	<b>000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선정 공고</b>	<b>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b>	해당 부서
2	000 입주단체/수강생 모집 공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 부서
3	000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등	해당 부서
4	000 인턴십 참여자/참여단체 모집	해당사항 없음	해당 부서
5	000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해당사항 없음	해당 부서
6	000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모 및 선정 공고	지방보조금법	해당 부서
7	000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결과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술심사담당관